

## 협력기관 협약서

제1조(협약목적)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와 ㈜가비소프트는 상호 긴밀하고 친선적인 협력을 기반으로, 행동중재가 요구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여 다중의 종합적인 안정망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연구 및 개발을 함께 수행하며, 상호 간의 인적, 학술 및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내용) 양 기관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.

1. 행동 인식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 방안 모색
2. 협력기관 보유 시설 및 장비 등의 상호 이용
3. 협력기관 보유 인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
4. 기타 필요하다고 협의한 사항

제3조(유효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, 해지하거나 재협약을 하지 않으면 다음 연도까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1년씩 자동 연장하여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제4조(세부사항) 본 협약에 명시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협의에 의해 실무협의회를 별도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부칙: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.

2023년 3월 23일

GabiSoft

㈜ 가비소프트  
대표이사 김바름



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 
소장 박경옥